조은 노인 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 와 시설 제공자인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 1조 【 목 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설 서비스 제공자인 조은 노인전문요양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 재계약 여부를 유, 무선으로 확인할 것이며,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후 15일 이내에 조은 노인 전문요양원 측에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

④ 3항의 "계약기간 만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됩니다.
(단, 시설정원이나 입소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등급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등의 계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고시에 의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없이 자동적으로 변경 고시된 급여비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계약의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⑥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제 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① 입소 어르신의 입소 이용료는 매월 익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할수 있습니다)

②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셔야 합니다.

③ 입소 어르신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매월 25일 이전까지, 현금 및 계좌 이체로 하며,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시설이용료 납부 관련 통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 행 명 : 농협은행
구좌번호 : 351-0928-8988-73
예 금 주 :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

④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 용역의 구입 그리고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만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과 협의해 주셔야 하며, 이에 따른 실비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 별도 부담 하셔야 합니다.

⑤ 입소 어르신의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시설에 따른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세부내역(30일 기준)",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이용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 4조 【 계약자 의무 】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 과 보호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다음의 의무를 상호간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의무
1. 월 이용료는 규정된 매월 25일 이전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4. 인적사항 변동사항 발생 즉시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측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5. 입소 기간중 어르신 및 가족, 보호자, 방문객께서 소지중인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귀중품은 본 요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실 및 훼손 되었을 때는 본 요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②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 보호자의 의무
1.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공해 주셔야 만이 어르신을 간호, 간병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2.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3.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본원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4.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신후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5. 기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생활 규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③ 시설을 제공하는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의무
1.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본원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 적극 협조 할 것입니다.
2.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본원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분께 즉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3.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적기에 식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본원의 기타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제 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
1. 본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분께서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하실수 있으시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제 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퇴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퇴소 의사를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측에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 서비스 제공자인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요양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어떤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제 6조 【 퇴소 】

① 시설 서비스 제공자인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 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본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② 본원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분께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원에서 보관중인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셔야 합니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또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입소 어르신)에게 통보한 후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③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께서 퇴소를 하시는 경우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 지정한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합니다.

제 7조 【 입소물품 】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입소시 입소 어르신의 개인물품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제 8조 【 면회 및 외출, 외박 】

① 입소 어르신의 면회시간은 매일 09 : 00시부터 18 : 00까지입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면회시간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② 입소 어르신은 외출, 외박시 사전에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는 식사를 비롯한 간식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도 비치되어 있지만, 본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 및 기기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본 요양원에 제공해 주셔야 하며, 본원의 물품 반입 규정에 따라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물품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활도구 : 칼, 가위, 손톱깍기 등의 기기
음 식 물 : 떡, 방울 토마토, 곶감, 엿, 굵은 알사탕 등의 음식물

④ 외출, 외박중 입소 어르신께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는 즉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사실을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알려 주셔야만 합니다.

제 9조 【 시설관리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고지(告知) 드립니다.

②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음을 고지(告知)드립니다.

제 10조 【 건강관리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오니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소 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 별도 징수함을 고지(告知)드립니다.

④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시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 어르신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것이며, 입소 어르신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⑤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이념인 어르신의 활발하시고, 활달한 움직임을 위하여 "생활속의 재활"을 통해 근력약화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며, 휠체어 밀어 주기보다는 "휠체어 자가 운전하기" 등과 같은 어르신을 힘들게는 하지만 어르신 스스로의 움직임을 권유하여 근력 약화를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본원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호응하셔서 어르신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⑥ 본 원에서는 입소 어르신이 촉탁의사로 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여러 곳의 협력병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고자 합니다.

⑦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넓은 물리치료실과 병원급 수준의 물리치료, 재활치료 장비를 보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어르신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도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제 11조 【 시설물 배상 】

① 입소 어르신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원상회복 하셔야 합니다.

②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할 것이며,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 어르신(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 분께 현재의 상태에 따른 결과등이 나오는대로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보호자와 연락두절 등)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지속적인 관찰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져 골절, 두부손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상태악화 및 위급사항이 발생하여 긴급수술,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 하고자 함에 먼저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 동의를 구하겠으나, 연락 및 상황 등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先)조치후 보호자분께 연락드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요양원측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다려,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④ 입소 어르신께서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운명(殞命)하셨을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분께 즉시 연락드릴 것입니다.
단, 보호자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입소 어르신께서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운명(殞命)하셨을 경우"의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입소 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분과 정산(精算)할 수도 있습니다.

제 13조 【 임종 및 장례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시 치료 및 입원등의 조치는 보호자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보호자분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례는 보호자분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며,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고인의 마지막 길 까지 편하시며, 평화로이 영면(永眠)하실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합니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시 치료 및 입원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의 책임 하에 결정하겠습니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사망신고는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겠습니다.
4. 사망시 유류금품에 대한 처리는 행정기관의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의 지침"에 의거 처리 하겠습니다.

제 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1일 3식 및 간식을 입소 어르신께 제공하며, 입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식단표 및 간식 제공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소 어르신께 제공하고자 매 주간별 식단표와 간식 제공 계획서를 1층 식당과 엘리베이트 내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 15조 【 요양실의 배정 】

입소 어르신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입소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 어르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③ 입소 어르신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소 어르신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입소 어르신께서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알려드립니다.

⑤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 17조 【 기록 및 공개 】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입소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제 18조 【 배상책임 】

①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 어르신께 배상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 어르신께서 부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 장비 또는 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입소 어르신께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노인복지법 제 39조법 9의 금지행위 규정 준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어르신 학대로 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분은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셨을 때
2. 조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 어르신께서 임의로 외출하셔서 상해를 당하셨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 어르신께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셨거나 사망하셨을 때
4. 입소 어르신께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하셨거나 사망하셨을 때.

제 19조 【 이용 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르도록 협약합니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인 창원지방 법원으로 합니다.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43,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725,600	
	요양급여비용(80%)	1,725,600	71,900 x 8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617,700	
	요양급여비용(20%)	431,400	71,900 x 20%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187,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601,040	
	요양급여비용(80%)	1,601,040	66,710 x 8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586,560	
	요양급여비용(20%)	400,260	66,710 x 20%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031,9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476,480	
	요양급여비용(80%)	1,476,480	61,520 x 8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555,420	
	요양급여비용(20%)	369,120	61,520 x 20%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157,0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157,000	
	요양급여비용(100%)	2,157,000	71,900 x 10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0%)		
	식사재료비/간식비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001,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2,001,300	
	요양급여비용(100%)	2,001,300	66,710 x 10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0%)		
	식사재료비/간식비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1,845,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845,600	
	요양급여비용(100%)	1,845,600	61,520 x 100%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0	
	요양급여비용(0%)	0	
	식사재료비/간식비	0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43,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984,440	
	요양급여비용(92%)	1,984,440	71,900x 92%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358,860	
	요양급여비용(8%)	172,560	71,900x 8%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187,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841,200	
	요양급여비용(92%)	1,841,200	66,710x 92%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346,400	
	요양급여비용(8%)	160,100	66,710x 8%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031,9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697,960	
	요양급여비용(92%)	1,697,960	61,520 x 92%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333,940	
	요양급여비용(8%)	147.640	61,520 x 8%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9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343,3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898,160	
	요양급여비용(88%)	1,898,160	71,990 x 88%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45,140	
	요양급여비용(12%)	258,840	71,990 x 12%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9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187,6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761,150	
	요양급여비용(88%)	1,761,150	66,710x 88%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26,450	
	요양급여비용(12%)	240,150	66,710 x 12%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 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 요양시설 (개정법)	71,900	66,710	61,520	61,520	61,52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원				
	식재료비(1식)	2,070원				
	간식비(1회)	0원				
	이/미용료등	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031,900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1,624,130	
	요양급여비용(88%)	1,624,130	61,520 x 88% x 30일
개인 부담비용	소 계	407,770	
	요양급여비용(12%)	221,470	61,520 x 12% x 30일
	식사재료비/간식비	186,300	2,070 x 3식 x 30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일반	20%	15%
· 기초수급권자	0%	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8%	6%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자	12%	9%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본인일부부담금1)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①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ㄱ.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ㄴ.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ㄱ.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ㄴ.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 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②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